

기안번호 1152.2	<h1 style="text-align: center;">기안용지</h1>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 420)</p>	전결규정 4조 2항 부서장전결사항
----------------	---	-----------------------

처리기한	기안처	목적과	제1부시상
제정일자	기안자	전체구	결재
보안별한	기안명	67. 7. 15	결재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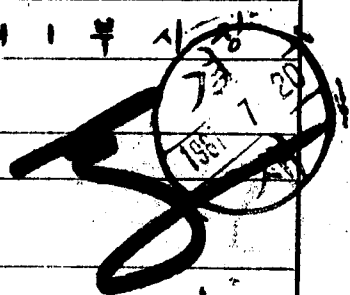
1967. 7. 21

1967. 7. 21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보조기관	행정국장 녹취과장 사방계장 조립	고시제 42호	(공명제)
------	----------------------------	---------	-------

협조	법제감관 문서계장	법무관 총무과장	행정과장
경수참	유신조 각안참조	송	정속법 제인무 1월21일

제 목 사방 지정지 해제

제 1 안 내부결재

재단법인 평화원 대표 김은환으로 부러 영등포구 신림동산 188필에 대한 사방지정지 해제신청이 있어 현지 조사한 결과

1. 본신청지는 1938년도에 사방지로 지정하고 1938년도에 사방시용한 지대로서

2. 신청목적이 부여지엄보도학원 건립을 조성코저 하는것인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산태 사업이 불필요한바

3. 학교 설치 위치조건을 감안하여 산림의 타 용도인 대지로 이용함이 토지이용상 효과가 클것임으로 아래와 같이 해제 처리코자 합니다

가. 181림 신청지에 대하여는 사방지정리가 아님.

나. 해제지 및 해제면적

명동포구. 신림동 산 188림 정 0.1557

제 2 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표사제 12 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정리를 해제코시 합니다

서기 1967년 7월 7.2일

서울특별시장

1. 해제지

소재지			지목	지적	리정면적	해제면적	간면적	소유자	
구	동	지번						주소	성명
명동포	신림	188	묘야	정 0.8700	정 0.8700	정 0.1557	0.7143	용산한강로 2가147	평화원 김윤환

2. 해제사유

불임야는 1938년도에 사방지정을 하고 1938년도에 사방시공을 한지대로서 그목적의 사회사업의 하나로서 학교건립 복지 조성을 위한 지역으로 산림의 타용도로 이용함이 타당함으로 이에 해제합니다

7.21  
1988

제 3 안

수신 재단법인 평화원 대표 김용환

제목 사방지정지 해제 통지

귀하가 제출한 영등포구 신림동 산 188 리  
에 대한 사방지정지 해제 신청에 관하여는 별지  
와 같이 해제 되었기 통지합니다.

참고, 산 191 리은 사방지정지가 아닙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및 해제지도면 각 1부 끝.

제 4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사방지정지 해제 통지

별첨과 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하였기  
통지함.

첨부 고시문 사본 및 해제지도면 각 1부 끝

수신처 서침 9 서사 63

제 5 안

수신 공보실장

제목 사방지정지 해제 고시 의뢰

별첨과 같이 고시 되었으니 시보에 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1부 끝.

제 6 안

수 신 산림청장

제 목 사방지정지 해제

1. 다음과 같이 사방지정지 해제 방  
침에 의거 별지와 같이 해제하였기 **별보**  
함 니 다.

가. 농산조 1152.2-5085 (65.12.31) 호 의  
3-가항에 의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임으로) 해  
제 함.

첨 부 사방지정지 해제지 조서 1부

